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3. 30 선고 2020가단10796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3. 3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5. 14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. 7. 16. 접수 제2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항인성

별지